

## 제 1조 (용어의 정의)

---

- ① "일일공급 자재"라 함은 피엔알(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에서 일정기간 추정 소요물량을 일괄 주문처리하고 일일 또는 일정주기 납품하여야 할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사전 사용량 정보를 공급사(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에 제공, 납품 요청하며 납품한 물량을 사용량으로 하여 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재를 말한다

## 제 2조 (계약물품 주문)

---

"매수인"은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소요 물량을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최소한 3일 이전에 납품물량 및 소요시기를 정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 (공급방법)

---

1.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의 납품요청에 대비 사용부서와 협의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고를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을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물량 및 지정 장소에기한 내에 공급 하여야 한다.

## 제 4조 (대금정산)

---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정산은 "매수인"의 실 인수물량에 대하여 매월 1회 (말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 5조 (재고조사)

---

"매수인"은 안정적인 자재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매도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재고 관리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사전 협의시 안전재고 기준(물량, 입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제6조(Sampling 검수)

---

"매도인"의 납품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실시한 검수(Sampling검수 포함) 결과 년 3회 이상 불합격 또는 감가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7조(감가 대상물량 산정)

---

1. 일일공급품의 감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적용대상물량은 해당 계약일 이후 직전 품질점검일 익일부터 금번 품질점검일까지의 납품물량으로 하고 해당 계약일 이후 품질점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일부터 금번 품질점검일까지의 납품물량으로 한다.  
단, 감가처리 적용대상물량은 불합격 품목이 발생한 해당 지역(포항,광양)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감가액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가액은 피엔알의 '자재입하 및 저장관리 지침'의 감가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불합격 발생 후 6개월 이내 재발품목의 감가적용 시 기준 감가율의 2배수로 감가한다.

## 제 8조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자재 또는 용역 공급협약서 및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